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3.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5. 3.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5. 4. 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이윤희)

가.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한바 있음.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 사항 명시(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근거 명시(안 제2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25조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5245(2025. 2. 7.)호]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279호

- 예고기간: 2025. 2. 10. ~ 2025. 3. 4.(22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별표 2에 있는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4항으로 신설 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내용 중 일부 조항에서 위임된 내용만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 조문을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어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건강진단 수수료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을 본문 또는 별표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법제처에서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4. 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